비정년계열전임교원 인사규정

제1조(목적) <조삭제 2019.1.23.>

- ①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교직원인사규정 제2조 및 교원신규임용세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비정년계열전임교원(이하 "교원"라 한다) 채용 및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항신설 2019.1.23.>
- ②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은 전임교수, 강의전담교수, 연구중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, 강사를 의미한다. 단 강사에 대한 세부사항은"강사에 관한 규정"에 의한다.<항신설 2019.1.23.>
- 제2조(임용방법 및 절차) ① 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(이하 "공채"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내 외의 석학, 중견학자 기타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국제교류사업 등 특정분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<개정 2019.1.23.>
 - ②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<개정 2019.1.23.>
 - ③ 교원의 충원계획은 교원인사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.<항신설 2019.1.23.>
- 제3조(직급 및 임용기간) 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전임교수, 강의전담교수, 연구중심교수,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직급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<개정 2013.12.4>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8.11.5.><개정 2019.1.23.>
 - ② 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한다. 단, 비정년계열의 강의전담교수, 연구중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초 1년으로 한다.<개정 2013.12.4><개정 2018.11.5>
 - ③ 국고 등 외부기관의 지원 및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그 사업지원 기간까지로 한다.
- 제3조의2(재계약 및 승진) ① 근무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1조를 충족하여야 하며, 교원인사규정 제3장 재임용에 의거 재임용할 수 있으며, 재임용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단, 강사의 재임용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3.12.4.>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8.11.5.><개정 2019.1.23.>
 - ② 전항에 의거 재임용된 교원 중 조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직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의거 승진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2.12.21.><개정 2013.12.4.>
- 제3조의3(의무) ① 강의전담교수의 책임 시수는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연구중심교수 및 산학협력중 점교수의 책임 시수는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<조신설 2018.11.5.><개정 2019.1.23.>
 -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직을 겸직 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사전승인 후 타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을 수 있다.<조신설 2018.11.5.>
 - ③ 강의전담교원은 본교에서 강의를 수행함과 동시에 강의연구 및 학사업무 협조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타교에 출강할 수 없다.<항신설 2019.1.23.>
- 제4조(전형방법) ① 교원의 전형은 교원신규임용세칙에 의한 1차 전형(전공 및 연구업적 심사), 2차 전형(공개강의 심사), 3차 전형(면접심사)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, 정년계열교원에게 적용하는 대표논문 심사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. 또한, 교원 중 연구중심교원에게는 공개강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1차 전형(전공 및 연구실적 심사)은 2인 이상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하되, 대상자가 1인의 경우에도 학과(부)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제5조(최종 합격자 결정) ① 최종합격판정은 1차 전형, 2차 전형, 3차 전형 평점을 합산한 점수로 하며, 모든 심사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 - ② 총장은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심을

명하거나 해당 공채를 무효화 할 수 있다.

- ③ 공채심사결과 최종 합격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원서류 및 임용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**제6조(재심위원회)** ① 심사단계별 공채심사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된 경우, 총장은 재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, 심사위원은 4분의3이상을 교외심사위원으로 위촉하다.
 - ③ 재심의 결과 최초 심사의 불공정성이 명확히 판명된 경우 당해 교내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- 제7조(공채 심사결과의 공개) 신규채용절차를 완료한 후 지원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.
 - 1. 신규채용지원자의 심사결과 공개요구가 있는 경우 신규임용이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한다.
 - 2. 공개 시에는 지원자의 단순한 합격·불합격뿐만 아니라 각 심사단계별 심사점수, 가부판정, 등급 등을 공개대상으로 하며, 심사위원별 채점점수, 지원자별 획득점수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8조(특별채용) 특별채용은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- 제9조(임용계약) ① 임용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<개정 2019.1.23.>
 -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,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
 - 1. 임용교수의 직급
- 2. 직무내용 및 책임강의시간
- 3. 임용기간

4. 급여

5. 근무조건

- 6. 기타 계약조건
- 제10조(신분보장) ① 교원은 임용기간 중 본교 정년계열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.
 - ② 교원은 계약기간 중 형의선고, 징계처분 또는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.1.23.>
 - ③ 교원은 계약기간 중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단 매년 교원업적평가 기준에 미달시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(급여) 교원의 급여는 연봉계약으로 정한다.
- **제12조(복무제한)** ① (삭제)
 - ② (삭제)
 - ③ (삭제)
- 제12조의2(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임용특례)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소속 학부(과) 전공교수 동의서가 첨부된 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 참조]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신청서 제출은 4회를 초과할 수없다.
 - ② 제1항에 의거 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 참조]를 제출한 교원에 대하여 총장은 업적평가(교원업적평가규정 준용)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의하여 임용된 정년계열전임교원은 본교 교직원인사규정 제15조1항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- 제13조(비밀유지) 공채에 참여한 교직원은 공채의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,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4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교원신규임용세칙 및 대학교원 채용관련 법령에 의한다.

부 칙(2007. 1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1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 이전 임용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1. 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 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신청서]

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신청서

소 속: 학부(과) 전공

성 명:

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학기에 아래와 같이 정년계열전임교원 임용을 신청하오며, 이에 따른 심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	_	Oŀ	래		_	
학 부 (과)			신	청		
전 공			직	급		

붙임 1. 정년계열전임교원 심사 업적 보고서 1부.

2. 소속학부(과) 전공교수 동의서 1부. 끝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정년계열전임교원 심사 업적 보고서

본인의 정년계열전임교원 심사를 위한 업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제	l 출 서 류	: 1. 인적사항 각 1부 ()	
		2. 연구업적 각 1부 ()	
		3. 교육업적 각 1부 ()	
		4. 봉사업적 각 1부 ()	
		별첨 #1. 교원 자기기술서(#2. 학부(과) 전공 발전계획서()
※	제 출 하 는	업적목록에 ○표하시오.	
※	제출서류	서식은 업적평가보고서 양식을 준용한다.	

20 년 월 일

제 출 자: (인)

예원예술대학교 총장 귀하

1. 인적사항

성	명	(한글)			(한자)		주민등록 번 호		~				
현	주 소												
소	속	학부(: 전	과) : 공 :				평가계열	평가계열					
임	용일자			년	월	일		재임용일	년	월	일		
전공	응분야												
		구분		학교명		학고	·(전공)	학위수여 일		학위명			
		학사											
학	력	석사											
		박사											
비	<u> </u>	<정년	계열전임	함교원 전	년환임용 곤	·현 본인으	1견 등 기술						

소속학부(대학원) 전공교수 동의서

(본 서식을 토대로 학부(대학원)실정에 맞게 변환 작성하시기 바람)

학부 전공 교수는 년 월 일자로 비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 재학생지도와 수업, 하는 등 학부발전과 학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 전환 임용에 대한 학부(대학원) 소속 교수님들의 의견(동의서)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1. 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대상교원 인적사항

- 성 명:

- 직 위:

- 최종학위 :

- 소 속:

- 재직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

2. 학부(대학원) 현황

○ 학생 현황

편제(입학) 정원	재학생현황(학년도	학년도 학기 기준)		Ш	ר
(학년도)	1학년 2학년		3학년	4학년 계			14

○ 전공수업현황(학년도 학기 기준)

전임교원			겸임교원			객원 및 시간강사			전공	기타
인	원	담당시수	인	원	담당시수	인	원	담당시수	총시수	사항

3. 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임용에 대한 학부(대학원) 의견

- 1) 주요실적(신입생유치)
- 2)주요실적(전공운영 및 재학생관리)
- 3) 기타사항
- 4) 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임용 필요 여부

4. 소속학부(전공) 교수회의 결과(동의 여부)

학부 전공 교수의 정년계열전임교원 전환 임용과 관련하여 학부 (전공) 소속 교수회의 결과 교수의 정년계열전임교원으로의 전환 임용에 아래와 같이 동 의하였기에 동의서를 제출함.

<회의결과>

1. 회의안건 :

2. 회의실시 : 년 월 일

회의장소 :
참석교원 :
불참교원 :

6. 동의결과 : 참석 명 중 찬성 명, 반대 명

학부(과): ____ 성명: (서명)

성명: (서명)

성명: (서명)

성명: (서명)